

의안 번호	1856	【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. 12. 3.(금), 의회운영위원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2. 3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14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의회운영위원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22. 1. 13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,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3조)
-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서, 대표자증명서 발급,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, 청구인명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7조)
-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, 공표방법(안 제8조 ~ 제9조)
- 이의신청, 보정기간(안 제10조 ~ 제11조)
-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등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경숙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